

12

2019-12호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5
-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 9
-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 1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 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21
-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4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론회 30
-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 방안 의정토론회 41
- 충남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52
- 명품도로 건설 및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60
-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69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 등 대책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75
•스마트 혁명에 대한 충청남도의 현재와 미래상 의정토론회	84
•공공부문 노동자 안녕하십니까? 의정토론회	89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96
•경상남도의회, 홀로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행사 실시	98

최근 제·개정 법령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0
•장애인복지법	102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제4조제1항 등 관련 질의	104
--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7.] [인천광역시조례 제6263호, 2019. 11. 7., 제정]

주요목적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로봇랜드”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3. “로봇산업”이란 제1호에 의한 로봇과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법 제7조제1항의 분류체계에 의한 로봇산업을 말한다.
4.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의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로봇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육성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로봇랜드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로봇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랜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봇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봇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

3. 로봇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전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로봇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시장은 로봇기업의 지원 및 로봇랜드 조성 등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를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사업)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
5. 로봇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담기관이 제1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기업, 로봇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

[시행 2019. 11. 12.] [경기도조례 제6399호, 2019. 11. 12., 제정]

주요목적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간접흡연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어린이의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에 노출되어 이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아동 복지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어린이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노력의무) ① 도민은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숙지함과 동시에 어떤 장소에서도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민은 도가 실시하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정 등에 있어서의 간접흡연 방지 등) ① 보호자는 가정 등에서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흡연자는 가정 등에서 아이와 같은 공간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가정 등 밖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보호자는 가정 밖에서도 간접흡연 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설 또는 흡연전용실 기타 흡연용으로 제공하는 장소에 어린이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흡연자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기타 이들에 준하는 시설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책 개발 및 예방) ① 도지사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유해성, 금연의 효과 및 금연 치료에 관한 지식의 보급 개발 및 예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 ① 도지사는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그 밖에 다른 교육장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한다.

1.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
2. 경기도 어린이집 및 학교
3.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도지사는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대한 사무를 전문가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 ① 도지사는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2.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3. 어린이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예방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례

[시행 2019. 11. 6.] [부산광역시조례 제6012호, 2019. 11. 6., 제정]

■ 주요목적

건강 격차 해소 및 보편적 건강 수준 향상 등 부산광역시의 건강형평성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 도시 구현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형평성”이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역적 차이에 따라 구조적·잠재적으로 피하거나 고칠 수 있는 건강수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 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마을간호사”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소속 간호사로서 주민에 대한 건강 상담, 주민의 건강생활 관리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마을건강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건강활동가”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제6조에 따른 마을건강센터에서 주민조직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건강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는 건강형평성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결정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는 환경유해요인(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취약한 계층과 노출이 심한 지역 등의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 이로 인한 건강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현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 실현계획(이하 “실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건강불평등 관련 실태조사 및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건강형평성 실현 사업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현계획의 내용이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건강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실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건강형평성 실현 사업) ① 시장은 시민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 평균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 건강생활실천 및 보건서비스 등 분야별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시책의 개발
2.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건강 기반 조성을 위한 건강공동체 조직 및 운영
5.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사업
6. 건강형평성 정책 대상자 참여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
7. 환경유해요인에 취약한 계층·지역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8. 그 밖에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단위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마을건강센터(이하 “마을건강센터”라 한다)를 읍·면·동마다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건강 관리 및 건강공동체 활성화 사업
2. 마을건강을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 조성 사업
3. 건강 상담, 만성 질환자 등록관리 등 건강 서비스 제공
4.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
5. 마을건강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건강조사 및 건강지표 생산·관리
6. 마을간호사, 마을건강활동가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건강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건강도시지원단 운영) ① 시장은 마을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건강도시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총괄적·전문적 기술지원
2. 마을건강센터 프로그램 컨설팅 및 교육
3. 마을건강조사 기술지원
4. 그 밖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건의료 등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건강형평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강형평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실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건강형평성 실현 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을건강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형평성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가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건강형평성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시민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형평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

[시행 2019. 11. 14.]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316호, 2019. 11. 14., 제정]

주요목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목적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 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 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 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 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7.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방안

제6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보행환경개선에 드는 비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희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 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한다.

4. 보행 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여 보행 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제10조(보행환경시설 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11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점검) ① 도로점용허가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9조의 이행 및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이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시행 2019. 11. 15.]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232호, 2019. 11. 15., 제정]

주요목적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정책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반려동물의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국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15.]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547호, 2019. 11. 15., 제정]

■ 주요목적

광명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FAIRTRADE 마크로 인증한 제품 및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 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제6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계획) ① 시장은 광명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 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및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3장 위원회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정 무역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량이 높은 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의 심사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자문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심사수당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정무역 제품 판로 확대

제15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시청, 시의회, 공사, 재단 등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제정)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7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사용 등) ①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 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예산·회계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충남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의정토론회

〈'19. 10. 16.(수), 16:00~18:00 / 당진항(삼교호) 함상공원 내 함상카페〉



I 총 평

(이계양 의원)

- 금번 토론회는 항만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1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당진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항만분야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당진항 발전의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음.
 - 당진항은 충청남도에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구로 환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전략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었음.
 - 이를 위하여 거버넌스 구축과 항만발전의 견인을 위하여 당진에 충남형 항만공사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항만과 배후단지 뿐만 아니라 배후도시와 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

○ 항만산업에 대한 국내외 여건 분석으로,

- 글로벌물류(Global Logistics)의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과 21세기 최대의 이슈로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 세계 제 1의 경제대국 순위 변동 (미국 vs 중국), 북극해 항로와 태평양 해역 패권 다툼 심화 등 태평양항로 주도권 경쟁,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강자 (중국 vs 인도), 중국과 인도의 인도양 해역 패권 다툼 심화와 유라시안 항로의 주도권 경쟁에 대하여 언급함.

○ 당진항과 당진시의 환경 분석을 통한 당진의 과제로,

- 글로벌물류(Global Logistics)와 산업의 패러다임 이동(Paradigm Shift)에 대비하기 위하여 ①당진항의 인터모달(해운, 항공, 철도, ICT-Platform) 중심 글로벌 운송 네트워크 형성, ②중국 중심의 항로 재편에 편승, 한중 FTA와 전자상거래 대비, 대중국 역직구 플랫폼 구축, ③중국 내륙항(Dry Port)과 해상-철도 연계체계 구축, 유라시안 대륙 진출 경로 확보, ④당진항을 모항으로 하는 선사 및 항로 확보, SSS(Short Sea Shipping) Network 강화, ⑤당진항 배후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제4차 산업 기반의 혁신형 산업 클러스터 조성, ⑥당진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기반의 e-Logistics 비즈니스 활성화를 제시함.
- 새로운 환황해경제권 형성 및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물류네트 구축을 위하여, ①서해안 항만도시협력벨트 및 새로운 환황해경제권 형성을 통한 글로벌 위상 강화, ②당진항을 일대일로의 한국 거점으로 한 유라시안 Sea & Rail 인터모달리즘 확보, ③당진-인도 간 직항로 개설의 필요성을 제시함.

○ 당진항과 당진시의 상생발전 전략으로

- 충남 제 1의 무역항 위상 확보를 위하여 ①충남항만공사(Chungnam Port Corporation) 설립, ②충남의 대표 무역항 조성, ③충남지역 항만들을 당진항 중심으로 충남항만그룹 설립을 제시함.
- 충남당진국제농수산물유통단지 조성을 제안함.
- 서해안 항만도시 협력 벨트 형성을 통한 당진항의 위상 정립을 제안
- 한중 열차페리 개설 추진, 당진항 철도 인입을 전제로 적극적인 가능성 검토 필요성을 제시함.
- 새로운 항로 개설 및 한반도 랜드브릿지(Korean Land Bridge)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

○ 결론 및 제안으로

- 산관학연이 공동으로 ‘거버넌스체계(National Ocean Governance System)’를 구축함으로써 충남이 당진항의 발전을 주도하고 2050 당진의 미래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함.
- 항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통한 환황해의 선진 항만도시 당진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아래 8가지 사항을 제안함.
 - ① 당진항 배후지에 한중 FTA 대응 물류산업 Platform 및 당진 해양산업 Cluster 조성
 - ② 당진시 산업구조 조정 및 충남당진국제농수산물유통단지 조성
 - ③ 당진항에 철도 인입 후 유라시안 해상-철도 Intermodal Network 구축 및 인도 직항로 개설
 - ④ 환황해 Intermodal Depot 및 특화된 ‘생산·판매·물류 통합형 항만산업물류 단지’ 조성
 - ⑤ 지방공기업인 충남항만공사(Chungnam Port Corporation) 설립, 당진항 발전 견인
 - ⑥ 환황해권 도시협력 강화를 위한 서해안 항만도시 네트워크 구축
 - ⑦ 당진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당진항 Governance 체계 구축
 - ⑧ ‘2050 당진의 미래’ 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당진의 위상 정립

② 지정토론(5인)

①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해양경제 성장에 따른 항만도시에서 新해양도시로 전환이 필요함.

- 앞으로 항만은 항만산업, 해양관광, 해양첨단장비,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 성장이 예측됨.
- 해양경제는 해양기반산업과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상호 연관된 개념으로, 해양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지식혁신의 시너지 창출이 필요함.

○ OECD(2014) 자료에 따르면, 항만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만과 도시의 성장수준과 패턴에 따라 특화전략이 필요함.

- 항만의 지역경제효과를 올리고, 생태계 훼손·환경오염 등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켜야함.
- 항만이 지역경제의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기능과 관련 깊은 해양산업을 발전시켜 항만·해양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해양과학기술 등과 연계한 해양신산업 육성과 항만과 비행만간 부문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해양경제 동력을 창출해야함.

○ 우리나라 60개 항만지역이 불균형 발전하고 있음.

- 항만정책 수요 등은 부산, 광양, 인천 등에 집중됨에 따라, 항만 인프라만 조성되어 있을 뿐 항만산업·항만서비스산업 등 지원이 부족함.
- 지역에서 ‘항만’만을 개발·운영한다고 해서 인구를 유인하거나 지역경제의 활력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문화·생태자산과 산업생태계와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사료됨.

○ 우리나라 항만은 주변 해안공간 및 배후도시와의 단절로, 종합적 연계발전체계 미흡함. 배후지역의 토지는 항만과 연계성 없이 단순한 이용에 그치고 있음.

- 하펜시티, 빌바오, 제노바 등은 기존 산업용지와 항만시설용지가 친수공간이나 소비 공간으로 전환해 공공공간과 주거·사무·상업지구 등 복합용도로 사용됨.

- ※ 항만개발·운영이 배후지역의 단일용도와 기능과 연계될 경우 경제적 리스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시경제의 다양성(엔터테인먼트산업, 관광·레저산업, 문화산업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연안·항만·국토와 관련된 국가계획의 기조는 항만-연안과 항만-도시-지역 간 거점연계개발 등을 통한 연안·항만·국토의 융·복합 패키지형 활용에 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함.
 - 그러나, 항만계획은 하드웨어적 인프라의 조성·확충에 초점, 연안·국토 계획은 선언적 수준의 정책방안에 불과함.
 - 국토개발계획의 긴밀한 연계구조 마련이 필요한데 연안과 항만과의 산업적·경제적·문화적·생태적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연안·항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패키지형 종합적 실천방안을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당진,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신해양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제언으로 연안·해양의 발전역량을 결집한 지역 맞춤형 해양혁신성장 모델 마련 필요함.
 - 당진, 항만공간과 해양신산업을 연계한 당진의 발전방향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 19.10.10. 발표)〉

- ◆ 2030년까지 ①11.3조원의 해양수산 신 시장 창출 ②20개의 오션스타 기업 (매출 천억 원 달성 기업) 발굴, ③최고기술국 대비 95% 수준의 해양수산 신기술 확보 목표
- ◆ ①해양바이오 산업, ②치유·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신산업, ③친환경선박 연관 산업, ④첨단해양장비 산업, ⑤해양에너지 산업의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중점 육성 계획
- ◆ 해운, 항만, 수산 등 이미 세계적 수준인 해양수산 주력산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하여 스마트 산업으로 재도약 추진



- ※ 참고) 당진항 규모와 유사한 캐나다 헬리팩스항만은 항만 유희부지와 시설을 활용해 지역기업·연구원·대학 간의 전문 지식·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기 위한 해양창업 공동작업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해 지역의 활력 부여 필요
- 당진항과 주변 해안공간의 연결성과 생태적 건강성, 친수성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항만의 친수공간은 물리적·시각적·생태적 연결성과 해안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연안·항만지역의 심미성과 문화적 다양성·지속가능성 부각이 필요함.
 - 항만·연안토지계획(port & coast lands planning) 체제를 구축해 경제 산업, 생태환경, 교통·접근성, 주거환경, 연안재해 대응 등을 위한 복합용도의 공간배치 필요

② 김현기 (사) 당진해양발전협의회 회장

-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화된 화주 전용 산단 개발을 통하여 신 해양 경제 거점 마련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함.
- 항만과 공항도시의 산업입지 특성을 고려한 화물 유발업종을 선정하여 미래형 항만도시 조성개념에 적합한 소재산업을 선정함으로써 향후 수요 기반 조성으로 전략적 유치 업종을 선정하고 활성화 추진이 요구됨.
- 항만과 공항 및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민관합작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이상적인 지역개발 모델을 창출해야함.
- 경쟁 및 상생관계에 있는 역내 항만들과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함. 연안화물 급증에 따른 당진항의 민자 개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일반물류 및 항공물류를 취급할 수 있는 당진항 및 화주전용산업단지를 조기개발 해야 함.

③ 이병성 (당진항만물류협회 회장)

- ‘항만개발의 주체가 국가 또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

- 충남도와 당진시의 행정과 정치는 석문국가공단 배후에 항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국가재정을 확보하여 송산부두의 개발을 서둘러야 함.
- 우선,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선제적 항만기반 확보를 서둘러야 함.
- 박창호 교수께서 지적하신 ‘당진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전략들을 당진시가 갖고 있는가?’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있어야 함.
- 마지막으로 충남도와 당진시 항만과의 조직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당부하며 항만관광공사를 매개로 하는 항만사업의 지역사업화에 전력을 다해야 함.

④ 이구영 (충청남도 해운항만과장)

- 항만별 특화발전 유도 및 상업항 기능 확대가 필요함.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이 필요함.
- 충청권내 지역화물 유치에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의 조속 개발('19.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석문 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항만 경쟁력 제고('19. 11월 기본계획 착수예정)를 위해 추진 중임.
- 항만 마케팅 활동 강화 및 대외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함. 중국 동북지역 항만과의 교류협력 강화, 항만관련 국제세미나 개최를 통한 브랜드 홍보를 추진 중임.
- 당진항 개발방향은 제철·철강 전용항에서 상업·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 육성해야함. 이를 위하여 배후 산업단지별 화물 특성을 고려한 지원항만으로 운영하고 배후수송망 및 진입도로 건설 등을 통해 항만 물류 효율성을 확보해야함.
- 그동안 주요 추진현황으로 아래 사항을 추진함.

-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간) 건설 추진(기본설계 추진 중)
- 평택당진항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건의(도→해수부, '18. 4~)
- ' 19년 항만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당진항 90백만원(도 27, 시 63)
- 도유재산 교환을 통한 당진항 지원센터 건립('18. 11.)

○ 물류항만 육성을 위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 21~' 30)” 주요 요청 사업으로

- 당진항 신청사업 10건 1조 3,563억원으로 그중 중요사업으로 ① 부곡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822억원) ② 송산지구 일반부두(민자부두) 조성(1,502억원) ③ 석문지구 신항만 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5,166억원) 등의 사업을 요청함.

⑤ 한영우 (당진시 항만수산과장)

- 근래 해운항만분야의 이슈는 ① 항만의 패러다임 변화, ② 항만배후단지 중요성 부각, ③ 남북경협 기대감 고조, ④ 전 세계적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도입에 박차, 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항만 구축임.

○ 당진항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우리시는 전통 농업을 기반 성장한 도농복합도시로서 항만과 도시의 연계가 미흡하고 항만을 연계한 수출·입 기반 중견기업의 부족
⇒ 항만을 중심으로 당진시 개발전략 수립 필요
- 우리시 등록 사업체 및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영세·소규모로서 질적인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음
⇒ 항만·선박관련 서비스업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토착화 정책 추진 필요
- 제철·철강(현대·동부·동국) 및 전력(당진화력)등 항만이 특정산업 중심으로 개발·운영되어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 항만·물류 관련 지역(향토) 기업체 육성방안 수립 및 정책시행 필요
- 항만을 중심으로 성장한 타 지자체 대비 전문 인력·관련단체 역량 미흡
⇒ 市 항만관련 인력(조직) 보강, 항만 및 물류관련 민간단체 지원확대 필요

○ 당진항 발전 방안으로 아래 사항을 제안함

- ① 다목적 종합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 서비스 집적
- ②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타 항만과의 차별화 전략 필요
- ③ 다목적/다기능 해양관광·물류 중심으로 도약위한 기반 조성
- ④ 포트 비즈니스 마케팅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⑤ 통선문 설치를 통한 내수면과 해수면의 교류 소통
- 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를 통한 국가기관 유치

3 종합토론

○ 항만발전과 더불어 항공물류 등에도 관심이 필요함.

[보충설명 : 김현기 사) 당진해양발전협의회 회장]

○ 바다는 공공재적 성격임. 사유화 독점화되어서는 안 됨. 지금 충남의 해양정책은 다시 회복하는 정책으로써 항만개발과 수산자원 및 생태계 회복도 고려하는 한편,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추진해야함. 그러한 원칙을 지켜야 하는 시기임.

[보충설명 :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박창호 교수님 지적과 같이 충남은 개발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임. 개발과 더불어 생태계 보존, 시민의 행복이 중요함. 많은 사람들이 삼교호를 찾는데 삼교호에 대한 관광자원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기 바람.

[질의 : 최은숙 지역주민]

⇒ 바닷가는 외진 곳임. 따라서 주변에 시민 친수공간을 형성해야함. 소극적 친수활동 및 적극적 친수공간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삼교호 인근에서 다양한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휴양, 관광, 레저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함.

[답변 :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



○ 평택처럼 정부나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끌어 낼 수 있는가?

[질의 : 최은숙 지역주민]

⇒ 충청남도과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 항만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함.

[답변 : 김현기 사) 당진해양발전협의회 회장]

⇒ 기업을 포용하고 기회를 주어야 함. 항만 거버넌스의 모습은 과거와 같이 ‘투자 - 수익 - 세금납부’의 시대는 끝났음. 기업도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동반자로서 기회를 충분히 주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함.

[답변 :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부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당진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함.

[질의 : 이춘호 동부항만사원]

⇒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이름. 향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후에 확인이 가능함.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분석활동을 하고 있음.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것으로 판단됨.

[답변 : 이구영 충청남도 해운항만과장]

○ 토론회에 대한 아쉬움으로 당진 땅을 되찾은 후에 발전방안에 대해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임.

[이봉우 당진시 시민협회 회장(겸 당진땅수호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회장)]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2. 당진항 활성화 방안

<결 과>

- 항만산업과 배후도시 발전 트렌드를 읽고 미리 준비해야함
- ‘충남항만공사’ 등 항만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 필요함
- 거버넌스 체계 구축, 기업을 이익집단이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함
- 지역 맞춤형 해양혁신성장 모델 마련이 필요함
- 4차산업과 연계된 항만 발전이 필요함
- 배후도시와 항만이 함께 발전해야함
- 항만발전은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야함
- 4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화주전용산단은 항공철도물류와의 연계하여 발전방안 검토가 필요함
- 기타 기업유치, 삼교호 통선문 설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송산 부두 조기 개발, 당진 땅 찾기 등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추가 토론회 준비
 - 충청남도 해양수산업, 당진시 항만수산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당진항만관광공사, 사) 당진해양발전협의회, 당진항만물류협회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저감 방안 의정토론회

〈'19. 10. 17.(목), 14:00~16:00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I 총 평

(조승만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됨.
-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을 위하여 상시 감시체계 구축, 농가지원 사업추진, 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 유도 등이 요구됨.
- 해결방안으로 사조농장 이전 및 폐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상시감시체계와 전문가 컨설팅, 사조문제 TF팀 구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안희권(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 내포신도시 주변 악취 관련 현황

○ 가축사육 분포

- 내포신도시 아파트 단지 2km내 50농가에서 143.3천두 사육

○ 악취 저감을 위한 추진성과

-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 내포인근 농가 이전·폐업 추진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소방·전기·축산·환경 합동점검

□ 축산악취 저감 기술

○ 축사 내·외부 및 분뇨처리시설

- 축사 내·외부 청결, 건조 상태 유지

- 축사외부 제초작업(특히 여름철)

- 가축분뇨 도로에 흘리지 않기

- 퇴·액비화시설 침출수 유출 금지

- 톱밥축사 깔짚 유출 금지

- 축사주변 꽃 및 나무심기

- 퇴비장 및 액비화시설 정상가동

- 파리 등 해충 구제

○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 악취 심각지역 내 농가를 묶어 축산악취 개선시설 설치 및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 2016년 5개 지자체, 2017년 5개 지자체, 2018년 3개 지자체 사업추진

□ 저감 방안

○ 상시 감시체계(홍성군 추진 중)

- 무인악취포집기 24시간 감시체계 : 9개 농장 10개소
- 축산악취 개선반 운영 : 악취 탈취제 살포 및 농장관리 상태 상시 점검
- 불량퇴비 살포 감시원 운영 : 내포신도시 인근 6개리 집중 점검

○ 농가 지원 사업(홍성군 추진 중)

- 악취저감제 지원(2억 2천만원), 분뇨수거 지원(6억원), 악취저감시설 구축 지원(8억원), 악취저감시설 구축 지원 시 전문가 컨설팅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함

○ 충남 간척농지 활용가능 면적

-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2008)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간척지 임대 가능
- 농식품부 고시(2010-47) : 5년 마다 간척지 농업적 이용 종합계획 수립·시행
- 농업적 활용 면적 3,640ha : 친환경 축산단지 22%, 복합곡물단지 37%

○ 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에 따른 신축부지 확보 곤란
- 환경부 권고안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50m 이내 젓소 사육 제한
- 전국 230개 지자체 중 약200여 개의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운영 중
- 지자체에서는 환경부 권고안 보다 강화된 제한구역을 설정함
- 축산에 전념할 수 있는 압지 수요 증가: 민원 발생 소지 낮고, 차단방역이 용이한 곳
- 간척농지는 축산단지 조성 적지
- 주거밀집지역과 원거리 위치해 민원발생 소지 낮음
- 차단방역이 용이해 질병관리 유리

○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 유도

- 행정처분 강화 : 상시 감시 체계 연계

② 지정토론(5인)

① 문병오 (홍성군 의원)

- 충남도에서 근본적으로 악취저감 대책인 이전·폐업보상 적극적으로 나서 내포 신도시 정주여건 마련 필요
- 충남도와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취저감 예산을 축사매입보상금으로 추진 하여 점차적인 근본적인 대책 추진 필요
- 제도 개선
 - 축산법 : 기업형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및 축산시설 관리강화
 - 악취방지법 : 기업형 등 일정규모 이상 축산악취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 되도록 법 제도화 추진

② 오진기 (충청남도청 축산과 과장)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관련 민원현황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체	501	4	1	3	12	31	63	152	177	48	7	1	
2016년	241	4	-	2	8	18	21	87	63	34	4	-	-
2017년	124	-	-	-	3	7	22	10	73	7	2	-	-
2018년	74	-	1	1	1	2	8	36	16	7	1	1	
2019년	62			1	1	4	12	19	25				

- 지난 7.23-9월말까지 축산악취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새벽 2-6시 축산악취 점검을 통하여 농가 경각심 고취 : 악취포집 5회, 행정처분 2회
- 축산 농가별 담당자를 지정 축산악취 개선에 노력하였지만, 늦은 저녁, 새벽에 발생하는 축산악취 원인 규명 실패(지형, 풍향 등의 원인으로 추측)

○ 축산악취 개선 추진대책

- 사업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단위 : 백만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6종	2,318	764	844	710	
악취저감시설	8개소	900	288	360	252	
폐사축 처리기 지원	4개소	100	32	40	28	
가축분뇨 수거비용	20천톤	600	150	150	300	
축산악취저감제 지원	20톤	225	90	90	45	
수분조절제 지원	4천톤	425	170	170	85	
축산악취 개선반	2개조	68	34	34		

▷ 지원 후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부적절 농가에 대한 패널티 부여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장 담당자 지정(4월 중)

· 대 상 : 내포신도시 축산농장 중 관리대상농장 10호 선정

· 지정방법 : 도 축산과 개인별 관리대상 농장지정(양돈농장 위주)

- 월별 1회 이상 축산농장을 방문 축산악취 강도, 개선여부 점검

▷ 담당자별 지정된 축산농장의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책임성 부여

- 주기적인 농장점검 실시(5월부터 실시)

· 점검요령 : 월 1회 이상 담당 축산농장에 대한 축산악취 점검실시

· 점검내용 : 해당 축산농장 관리상태 확인, 축산악취 정도파악, 악취저감사업 수행여부 등

- 점검위치 : 내포신도시 인근 축산농장(10개소), 퇴비공장 루산

- 점검조 편성 : 반장(축산과 6명), 축산악취 개선반(2개조)

※ 환경부서(조 편성하여 신고 시 시군과 2인1조 악취포집), 축산악취개선반(격주로 근무)

- 점검요령

· 5월부터 축산악취 발생 취약시간대(새벽 02~06시)에 인근 양돈농장, 퇴비공장을 순회하면서 축산악취점검(시간대별 1회)

- 축산악취 개선반 활동일지를 시간대별 작성하여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 여부 확인 ⇨ 악취 취약농가 구분
- 축산 악취 취약농가의 경우 현장에서 10분 이상 집중 점검
- ※ 축산악취 발생 시 환경부서(도, 홍성·예산군)에 통보하여 악취포집 등 점검강화

③ 이병임 (홍성군청 환경과 과장)

○ 내포신도시 악취 관련 추진 현황

- 가축사육 현황 (전국 최대 축산군)

(단위 : 마리)

축 종	전 국	충 남	홍성군	전국대비	충남대비
한우	3,133,918	383,267	54,068	1%	14.5%
젖소	407,070	68,231	4,189	1.0%	5.3%
돼지	12,390,405	2,493,455	596,311	5.1%	23.9%
닭	164,529,579	28,311,000	3,035,441	2.8%	11.6%

○ 홍성군 부서별 추진현황

[환경과]

-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단위: 개소, 백만원)

연 도	점검 대상	위반 업소수	위 반 내 용				조 치 결 과						
			무단 방류	기준 초과	부정 적운영	기타	별 칙			행 정 처 분			
							계	고발	과태료	계	개선명령	사용중지	기타
2017	1,522	56	19	7	16	14	51	23	28	22	12	3	7
2018	1,583	49	8	9	20	12	47	15	32	28	14	2	12
2019	1,804	44	7	3	14	20	35	16	19	24	5	11	8

- 무인악취 포집기 운영

· 고정식 : 9개 농장 10개소, 24시간 운영 / 이동식 : 1식(민원발생지역 운영)

- 축산 배출시설 이전·폐업 추진
(4개 농장 : 철거완료 2개소, 보상합의 1개소, 이전을 위한 행정소송 1개소)
- 가축사육제한지역 조례 개정 추진
(홍성군 전지역 신규 가축사육시설 제한 (한우 일부 제외))

[축산과]

- 내포신도시 주변 경관사업 추진
(내포신도시 주변 사료작물 생산 확대 및 경관개선사업)
- 축산 환경개선사업 : 내포신도시 주변 3Km 이내 악취저감제 지원
- 축산농가 분뇨 수거 지원
(내포신도시 주변 3Km 이내 돼지 사육농가 처리비 50% 지원)
-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수분 조절제 지원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친환경 축산 실현)
- 악취 저감 시설 지원 : 악취저감시설 및 폐사축 처리기 설치비 지원
- 축산 악취 개선반 운영
(기간제 4인 연중 수시점검을 통하여 농가 인식전환)

[농수산과]

- 악취저감 유기질 퇴비 지원
· 내포지역 밭작물 재배농가 완숙 유기질 퇴비 지원으로 악취발생 예방

[농업기술센터]

- 가축분뇨 퇴 액비 부숙도 무료검사 지원
· 내포신도시 주변 농가 20농가 중 13~15농가 부숙도 검사 시행

[홍북읍]

- 불량퇴비살포 감시원 운영
·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근 6개리 상시 순회 점검 실시

④ 김영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광역악취 개선사업

- 개방식돈사 리모델링(무창돈사회), 무창돈사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무창돈사 악취저감, 악취방지벽+이산화염소장치

- 축사 형태에 따라 갖춰진 분뇨처리시설을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계절적 분뇨처리의 어려움과 낙후된 축사시스템 등으로 난관에 부딪칠 때,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적극 활용
- 축산농가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 중 자부담이 있다.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라도 참여 유도

○ 상시감시체계 강화

- 무인악취포집기, 축산악취 개선반 활용
- 감시보다는 악취개선 방안이 실제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
- 악취개선을 위한 점검 목록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자체 입력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
- 방역의 어려움 때문에 감시반의 농장 출입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 가능

○ 악취저감시설 구축

- 전문가 컨설팅 의견 반드시 반영
- 악취의 원인을 먼저 찾아내고 그것에 맞는 저감 시설을 도입
-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원인에 맞는 악취저감시설을 하도록 규정 마련

○ 주변농가 이전추진

- 간척지 활용방안 적극 모색
- 양돈산업도 계열화가 진행되어 실제 양돈 농가들은 위탁농으로 전락하여 출하전 단계만 맡고 있는 실정
- 결국 가장 악취에 취약한 단계만을 담당하고 있어 악취 민원 소지가 많고 악취 개선보다는 사육두수를 최대한 늘려 키우는 것을 선호

○ 행정처분강화

- 상시감시체계와 연계해 문제 있는 농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지역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열악한 농업경제에 그나마 지지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임.
- 축산분뇨문제는 단순히 농장주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홍성군



양돈규모가 60만 마리에 가깝다고 하는데 양분관리제나 경축순환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분뇨처리실태조차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 따라서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함께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홍성의 축산을 위해 단기적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야한다.

⑤ 김상홍 (홍북읍 주민자치위원장)

○ 악취 문제 해결 방안

- 악취문제를 해결방법은 풍향 및 시설과 규모를 산정하여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부터 일정 반경 내의 돈사를 이전 시키는 것임.
- 악취저감 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보다는 악취가 많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습도, 기압, 풍향 등 자연현상과 각 농가의 시설환경에 따라 악취저감의 한계점은 분명 존재 할 것이기에 또다시 민원에 휩싸일 것임.
- 돈사 이전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합리적 협의점을 찾아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내포 신도시 주민들도 마음 놓고 창문을 열 수 있는 기본적인 삶부터, 그로인해 더 나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포신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③ 종합토론

- 축산악취에 드는 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혁신도시나 축산악취 저감은 속도전이다. 내포악취 협력 거버넌스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 사조 문제 TF마련해서 집중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명품 건강도시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

[생활안전건강연구실 조무성 원장]

- EM 활용 축산악취 저감하자. EM을 사료위에 뿌려서 먹게 되면 체내에서 50% 악취 저감, 농가 주변에 뿌리면 악취저감 효과는 90%이상 가능해진다. E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농민 대표 이한도]

- 분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 비료 공장을 설치하면? 가축분뇨 수거 업체 어떻게 처리 할 것 인가?

[질의 : 청년 의장 이세봉]

- 액비, 퇴비로 활용하고 있으나, 유기질 비료 시장의 경쟁이 치열함 예를 들면 축협이 퇴비공장도 운영이 제대로 안됨. 시설보다 판로의 문제가 많은 상태임

[답변 : 오진기 과장]

- 자체 개발한 사료로 4개 농장 지정 후 검증을 했음. 그러나 농가에 가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신규업체 판로가 막혀있음.

원천적인 저감 후에 시스템화하면 100% 저감 될 것이라 생각함

[LH 아파트 동대표 장봉희]

- 도청예정지가 보상 이유로 축소되면서 신도시계획이 틀어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축산 악취의 고통 속에 지내게 되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조농장의 폐업, 이전 계획이 있는지?

[질의 : 내포뉴스 홍시화 기자]

- 사조농산 측에 상생발전특화조성제안을 했으나 재원이 없어서 불가하다고 회신 받음.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임

[답변 : 이병임 과장]

- 사조농산의 자구책이 없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 홍주신문 최은택 기자]

- 사조농산 해결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위를 만들어 대책을 강구하려 함

[답변 : 문병오 군의원]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사조농장 이전 및 폐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2. 상시감시체계와 전문가 컨설팅의 중요성
 3. 사조문제 TF팀 구성안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과>

- 관과 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축산법과 악취방지법 규제 제도 개선 촉구
-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참여 유도
- 사조농산 이전 및 폐업을 위한 관과 민의 협력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축산과, 물관리정책과), 홍성군청(환경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홍성군의회

충남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10. 22.(화), 15:00~17:30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이벤트홀〉



I 총 평 (김연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도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촛불항쟁으로 나타난 최근의 시대정신과 그 이전의 시대정신을 접목시켜 구체적인 계승사업 내실화 방안 등을 제안함.
 - 앞으로 활발한 계승사업을 위하여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민간과의 협력, 역사체험 교육 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이 필요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이충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 민주화운동의 사전적 정의는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 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 1987년 체제 이전의 민주화운동은 △이승만·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반미 자주평화통일 운동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1987년 호헌철폐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라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87년 체제는 ①미숙한 민주적제도, ②사회적 합의를 온전히 담아 내지 못함으로써 이후 각계각층의 민주주의 확대 요구 투쟁의 원인이 됨. 즉,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하는 요구와 신자유주의 양극화 체제에 대한 대안요구 등 다양한 민주화운동 의제가 설정되는 계기가 됨.
- 이에, 2017년 촛불 항쟁이 주는 의미는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적 심판 △사회적 다양성 요구 투쟁(다양한 소수자 권익 요구 투쟁)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촛불항쟁으로 나타난 시대정신과 87년 체제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접목시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젊은 세대와 교감을 확장한 계승사업지침 마련 등이 필요함.

2 지정토론(4인)

① 김영숙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

- 종전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통합되어 있었으나, 2017년 2월 ‘6월 항쟁 30주년기념사업’을 추진

하면서 △충남지역만의 지역별·부문별·계급계층별 민주화운동 분석 △대전과는 독립된 사업 및 과제 도출의 필요성이 커짐.

- 이에 따라 2017년 5월 27일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사업계획안을 의결하고 다양한 민주화운동계승사업의 방안을 마련함. 주요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충남 민주화운동사 편찬
 - 1) 충남민주화운동사 편찬위원회 구성
 - 2) 자료수집·정리·검증 및 초안 작성
 - 3) 충남민주화운동사 출판 및 배포
- 충남민주화운동 기념행사
 - 1) 광주민주화운동 40주기 기념행사
 - 2) 6월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행사
 - 3)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등
- 민주주의 시민교육 사업
 - 1) 민주주의 역사 현장체험 교육
 - 2) 민주주의 현장의 목소리 프로그램
- 조직안정화 사업
 - 1)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 2) 회원 확대 및 사무 공간 확보

② 정한구 (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 민주주의의 발전과 남북관계의 진전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 궁극적으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생각함.
- 이러한 이유에서,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남북정상 회담 및 북미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의 계기가 되었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
- 역사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과 전두환 정권의 민족화합 민족통일 방안 등은 군사독재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음.

- 충남의 민주주의 발전은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따라서 이벤트성의 단발적인 행사나 과거지향적인 기념행사들 보다는 미래세대의 주역들에게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나아가 민주주의 역사는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와 다르지 않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김문광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 해방 이후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족주의와 반공주의가 결합된 국가주도 국민교육의 성격¹⁾이었음을 지적함.
- 국가주도적 국민교육으로는 시민을 자주적 생활 능력을 갖춘 주권자로서 육성할 수 없으며,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음.
- 87년 체제를 통해 얻은 민주화의 문제점은 그 수혜를 제공에 따라 다르게 분배했다는 것임. 이는 교육 분야에서 능력에 따른 혜택과 함께 차별도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짐.
 - 87년 체제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 반쪽짜리 민주주의로 평가되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동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대상으로, 노동자는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얻어지는 낮은 지위로 전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임. 이는 곧 교육현장에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진정한 민주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국정과제로 제시함. 교육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자율, 존중, 연대의 가치를 민주시민교육 최소한의 원칙으로 제시
 - 주권자 교육을 주요 골자로 민주시민교육 제도 개편: 자율역량 함양
- 현재 충남교육청은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측정하고 민주적 학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1) 이승만 정부에서는 친미반공교육을,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서는 유신독재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실시함.

- 또한, 교육청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함. 따라서 충남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와 민주누리길 프로그램 등을 공동 기획하여 지역의 민주화 역사를 체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④ 이공휘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충남지역에서는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충남본부’와 학생, 농민, 노동자 등 시민 8,000여명이 모여 거리행진 등을 진행한 바 있음.
- 이 행진은 6월 29일까지 5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중봉기로 확대됐으며 민주화를 위한 전국적인 노력에 힘을 모은 바 있음.
- 그러나 일부 세력이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왜곡함에 따라, 직접 87년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2019. 8. 7.)
-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 제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일부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민주화기념사업 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져 사업진행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입법 마련 등에 최선을 다 할 것임.

③ 종합토론

-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시민, 노동 등 자생단체가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움. 이에 대해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계획이 있는가?

[질의 : 청중 1(전교조충남지부 지부장)]



- ⇒ 자생단체의 특성상 외부에서는 비조직적이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
- ⇒ 그러나 자생단체가 더 견고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회 차원에서도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답변 : 이충렬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 ⇒ 지역별 자생단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조차 의회차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 실태 파악 후, 적절한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답변 :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 모든 사업 실행과 지원에는 양면성이 있음. 따라서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
- ⇒ 민주주의의 본질은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 이라고 생각함. 도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임. 따라서 자생단체에서도 단체 간 지나친 갈등으로 인해 사업 마비의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잘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길 당부함.

[답변 :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 직접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최근 주민청원으로 「농민수당조례」를 제출하였는데, 통과가 되길 바람.

[질의 : 청중 2(민중당 당원)]

- 주민청원조례제도는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됨.
- 추후에는, 더 나아가 주민에게 조례를 공모 받아 의회에서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답변 :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위원장]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의 협력이 필요함.
 - 민주누리길 프로그램 등과 같이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활발한 민주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촛불혁명 이후의 시대정신과 이전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접목시켜 계승사업 내실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체험형 역사교육,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을 통해 직접 느끼고 경험 하는 것이 중요함.

<결 과>

-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 도지사는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지사는 민주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함.
 - 민주화운동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음.
-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주권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자생단체 등과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이 주권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자치행정과)
 - 충청남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 충청남도의회(입법예산정책담당관)

명품도로 건설 및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10. 30.(수), 14:00~16:00 / 서천문화원 2층 강당〉



I

총 평

(전익현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도로건설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군의원,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도로 건설 및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 최근 도민들의 관광지 도로경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서천군 역시 현재 도로 건설이 진행되는 만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로 만들어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토론자와 참석자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건설된 국내 도로경관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도로, 친환경생태도로, 산간국의 친환경경관도로 고려해 안전이 확보되고, 전체적인 조화를 염두에 둔 명품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논의함
- ⇒ 토론회의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부서와 관계기관등과 공유하여 현재 건설 중인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구간 가로수종 선정 및 경관조성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이명원 충북대학교 교수>

- 충청남도만의 특색 있는 도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후 충남도 내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의 종합적인 도로경관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필요하다고 주장함.
- 현재 도로설계편람 ‘경관편’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등급과 무관한 전반적인 지침내용으로 설계자 및 관리자에 혼선을 주고 있음.
- 충청남도 내 시·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 루트 개발 및 시범사업 선정(지역별 추천, 설문조사 등)
- 시범사업을 통하여 충남 전체 공간 관리운영개선, 도로정비사업, 도로재생사업 등 추진
- 도로문화를 함양·홍보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로문화포럼’ 운영들을 제안함

2 지정토론(6인)

① 양계승 (양자ENG 대표)

- 최근 도로건설에 따른 자연훼손과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
- 1960년대 농업정책에서 공업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연평균 20%이상의 경제 성장과 함께 물류 및 인구의 이동을 위한 차량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며 문제가 대두됨.
- 이는 중장기적 계획 없이 자동차수 증가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도로를 무차별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임.

- 기존도로의 문제점인 선형계획부터 기능 위주의 설계방식을 개선하여 명품도로 계획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함.
 - 지역 특유의 역사·문화·전통·자연자원 요소를 발굴하고, 공간별 테마를 설정하여 우수한 경관 및 지역이미지를 반영한 테마 도로 조성
 - 경관유형별 도로선형설계기법의 적극 활용
 - 도로의 가로경관을 위한 중앙분리대 및 가로수 등 토목수목설계기법 활용
 -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 활용한 도로건설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안함.

② 이남재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북서천 IC 설치 제안
- 서천군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국토의 중부권에서 서천군 접근 시 서천공주고속도로에 의존적이나 서부여 IC ~ 동서천IC사이에는 넓은 이격거리(22.9km)에 비해 IC가 없어 서천군의 지역 간 광역 접근성이 떨어짐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구간에 스마트IC 구축이 필요함
- 2022년 하반기까지 북서천 IC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홍원항, 춘장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지방도607호 서면~비인 구간의 확장공사에 내년도 5억원을 들여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4년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음.

③ 김현복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상무)

- 공사구간 국도21호선과 국도29호선 국립생태원 - 하굿둑사거리 - 동서천 IC 사거리 확장공사에 대한 현장책임자로서 명품도로를 위한 가로수 수종 선택 등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설명함.
- 2017년 7월부터 진행한 국립생태원 - 동서천 IC 8.05km 구간을 시설개량 및 4차로로 확장해 2024년 6월까지 준공 할 예정임.
- 친환경생태도시 서천을 상징하는 국립생태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로로 건설하기 위해 가로수 식재 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

④ 김아진 (서천군의회 의원)

- 서천군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금강하굿둑, 문헌서원, 춘장대 해수욕장 등 생태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경관도로 조성이 부족하여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관광자원화를 위한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는 토목·건설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산림 및 관광전문가도 토론에 참여 했으면 함.
- 주요 관광지 진입로에 명품 가로수길과 명품 해안도로 건설은 서천군이 추구해야 할 도로건설방향이 되어야 함.
- 금강변 가로수길의 뱃나무는 그 품종이 각기 달라 일시에 개화하지 못하고 춘장대길 가로수길은 은행나무 사이에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수종 간 경합이 발생하므로 계획적인 조경이 필요함.
- 가로수주변 전선의 난립으로 아름다운 경관도로조성에 방해요소가 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전선의 지중화 방안을 고려해야 함.

⑤ 조남용(서천군 건설과장)

-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 중 충남도는 7개도로가 포함되어있고, 서천군의 경우 중천면-서면 17.7km구간에 이르는 ‘군도 5호선 서해안 관광 배롱나무도로’가 2011년에 ‘낙조 감상하기 좋은 해안길’이라는 주제로 52선에 선정된 바 있음.
- 아름다운 해안도로변을 따라 백일홍과 동백나무로 조성되었고 중간에 해송이 있어 휴식공간으로 활용됨.
- 최근 서천군에서 직접 조성한 춘장대 ~ 홍원항 연결도로 서천군 대표 관광도로로서 관광자원 활성화와 볼거리와 먹거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 명품도로 건설의 일환인 서천군해양생태100리길 조성사업은 서천갯벌생태계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생태탐방로, 포토존, 생태체험장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장항읍 진입로인 마서면 송내리와 장항읍 창선리를 연결하는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함.
- 이 도로의 역시 명품도로를 지향하며 장항을 대표하는 도로로 건설하기 위해 가로수 식재 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할 예정임.

⑥ 홍성민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서천군은 2개읍 11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고유한 색깔을 가진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환경 갈등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기도 했으며 현재까지도 신음하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성경전레지가 있는 마량포구와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동백정과 춘장대로 유명한 서면지역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온배수 배출, 송전탑 전자파 발생 등으로 발전소와 지역민과의 갈등이 겪고 있으며
- 비인 해안도로 인접부근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유치문제로 사업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아픔이 있는 지역이다.
- 이밖에 쓰레기매립지 및 염산소분시설, 레미콘 공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시설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오늘날의 일반적인 도로는 환경보다는 개발위주의 정책이 나은 부산물이다.
- 관광자원화를 지향하고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로건설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경관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환경적 갈등을 해결해야만 지역이 꿈꾸는 서천군만의 명품도로를 만들 수 있음.



- 품격있는 서천군만의 명품도로 건설을 위해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길 제안함.

3 종합토론

- 도로건설에 따른 지반침하, 하천범람, 소음발생, 환경오염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 : 홍성민 국장]

- ⇒ 국도29호선과 국도21호선 구간은 연동침하에 의해 성토전(500~700일 소요)까지는 배수로 작업이 불가함. 이후 지반이 안정화를 찾으면 해결 할 수 있음.

[답변 : 김현복 상무]

- 주제토론이 서천군에 국한된 것인지? 충청남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질의 : 양계승 대표]

- ⇒ 충청남도 전체에 해당함. 도의회에서 명품도로에 관련된 사항을 충청남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한다. 도의 공모사업 통한 시군간의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실행에 옮겼으면 한다.

[답변 : 전익현 의원]

- ⇒ 해안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관도로와 명품도로의 개념은 다르다 지방도로는 경관심의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답변 : 양계승 대표]

- ⇒ 건설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관도로 쉼터 및 시설물 조성 후 사후 관리가 소홀함이 문제임.

[답변 : 김아진 의원]

- 명품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적합한 수종의 선택 및 현재 식재된 뽕나무처리 문제는?

[질의 : 홍성민 국장]

⇒ 수종의 선택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결정되기에 지반 성토가 끝나는 2~3년 후에 결정할 수 있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천군과 협의 후 선정하겠음.

[답변 : 김현복 상무]

○ 생태원 진입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의 재활용 여부?

[질의 : 조진연 주민자치협의회장]

⇒ 은행나무 이식 비용이 현저히 증가되어 현재로서는 제거 후 신규로 식재할 예정이나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업체와 상의 후 신중하게 결정하겠음.

[답변 : 김현복 상무]

○ 명품도로의 기본은 안전한 도로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질의 : 이강선 회장]

⇒ 도로건설의 전제는 경제성, 안전성, 기능성이다 도로의 불안전한 시설로 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답변 : 양계승 대표]

○ 경관위주의 도로건설보다는 명품시민이 명품도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읍면 단위의 개별적 접근이 아닌 전체적인 조화를 염두해 두길 바라며 스마트IC건설에 따른 간선도로의 확충문제에 대해 질문함.

[질의 : 공금란 서천생태연구소장]

⇒ 서천의 주요 관광지인 천방산 및 봉선저수지 진입이 용이하도록 북서천 스마트IC 건설로 개선할 수 있다. 이후 연계도로의 확충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답변 : 이남재 과장]

⇒ 스마트IC 건설은 서천군 전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IC 설치 최소거리 규정에 맞춰 공사가 타당함.

[답변 : 양계승 대표]



- 장항 하굿둑 주변도로 확장에 대해 철새 축제시즌인 가을, 겨울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함. 식재를 선택할 때 가을 겨울에 가장 좋은 나무들로 심을 수 있나?

[질의 : 노익현 장항 JC 상임부회장]

⇒ 도의회 상임위에서 건설 현장방문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음.

[답변 : 전익현 의원]

- 서천군 도로는 해안도로 내륙도로로 분리됨. 지나치는 도로에서 머물 수 있는 도로로 전환하기 위해 해안거점 포구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가?

[질의 : 한완석 비인119안전센터장]

⇒ 현재 상태를 점검 후 도정에 적극 접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답변 : 이남재 과장]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지역특성에 맞는 명품도로 건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로선형 계획단계에서 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를 선정해야 함.
 2. 도로전문가,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가 협업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 필요함.
 3. 서천군과 연계된 조경수 선정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과>

- 현재 건설 중인 국립생태원 ~ 동서천 IC 구간 가로수종 선정 및 경관조성에 적극 활용
- 명품도로에 대한 과제 도출로 민간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도로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의회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건설교통국)
 -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11. 1.(금), 14:00~16:00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홀〉



I 총 평

(한영신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충청남도 문화예술기반 확충의 필요성, 예술인 마을 조성, 충남문화예술 환경 조성 등을 제안함.
 - 앞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문화 분권의 실현 및 지자체 중심 고유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예술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이 필요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임재광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2014년 기준으로 79개 시·군·구가 소멸될 위험이 높다고 조사된 바 있어, 지역소멸은 단지 행정단위가 사라지는데 그치지 않고, 전승되어 온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산이 소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지자체 스스로 중심이 되어 만드는 자발적이고 고유한 문화예술 중장기 정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제도적으로 정립되기 위하여 △지역문화 재단의 재정적 독립성 보장 △재원의 충분한 확보 △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단 스스로의 발전의지 등이 필요함.
- 순수예술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예술인들의 활동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고, 충남도내에는 문예회관 등의 복합문화공간은 포화상태인 반면, 미술관이나 전문 공연장 등 특화된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미술관, 연극전용 극장, 무용공연장 등 장르별로 전문화된 공간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함.
- 전문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시설 등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이들이 고향에 정착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술인들의 특수성에 입각한 적절한 복지정책이 실현되어야 하며, 또한, 도시재생 사업에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예술이 함께 복원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이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2 지정토론(5인)

① 변영환 (충남문화예술연대 대표)

-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지역문화예술진흥법,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등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선언과 그에 따른 법령이 구비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의 첫걸음은 충남 문화예술인 마을 즉, 예술인공동체를 제안하는 바임.

- 예술인 마을이 형성되면 상시공연장, 박물관, 전시장 등의 공간에서 항시 수준 높은 예술을 감상하고, 예술을 매개로 한 일상적 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 마을이 활성화될 시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구축,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하고, 공동화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수 있음.
- 예술인마을에서의 예술교육은 자연스레 이루어져 전문예술인 양성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주거시설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공동화된 구도심 폐 산업공장지대, 폐교 등을 재탄생시켜 예술인들을 상주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② 류중열 (연출가, 천안대학로 극장 대표)

- 충청남도 지역예술가의 활동과 생존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며, 청년 예술인과 신생새내기 단체 지원 심사에 타당성 있는 규정과 공정한 매뉴얼이 필요하고, 충남연극이 전국에서 가장 뒤쳐진 분야인 만큼, 도립 극단 창단을 시급히 서둘러야 함.
- 공연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市)보조금 지원기관의 강당을 개방토록 하고, 조명시설을 보완하면 공연장 확보가 보다 용이할 것이고 지역 주민에게는 입장료 및 대관료상의 혜택을 주어야 함.
- 행사나 축제에 투입되는 예산을 전문예술가에게도 지원하여 실제적인 문화진흥정책을 실행해야 하고, 각종행사나 축제를 예술자문단(예술 감독)이 기획·추진하게 하여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진행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오태근 (충남예술총연합회 회장)

- 충청남도 문화정책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핵심키워드 생성과 충남 문화예술 환경 조성이 필요함.

- 공공성의 영역차원에서 예술콘텐츠를 생성하는 예술인들의 창작환경, 예술인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 전문예술직업인으로서의 복지까지 제시해주는 현실적인 정책 또한 요구됨.

④ 권영택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

- 생활 속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 동호회(86개 단체)를 선정하고 생활문화 개최와 주민자치센터에 전문예술강사를 파견하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음. 아울러, 소외계층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을 120개소로 확대추진.
- 도민 문화예술 브랜드 개발차원에서 윤봉길의사의 뮤지컬공연을 민간기업 투자유치(1억 이상)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 지속적인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 보부상 장마당놀이 시·군 공연으로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소속감, 연대감을 제고할 계획이고, 생활밀착형 문화시설확충 운영.
- 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문화예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이수자를 매년 50명 이상 확대할 계획임.
- 15개 시·군민의 문화향유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분석하여 문화격차해소로 문화예술 균형발전을 도모.

⑤ 안동순 (천안시 문화관광과장)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음악 창작활동 지원차원에서 음반제작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창작스튜디오 지원측면에서는 창작 공간(작가 입주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도심 일대에 공방거리를 조성하고 입주를 지원하고 있음.

3] 종합토론

- 충남 도내의 각 시·군의 문예회관 대관 시 지역주민을 우대하여 대관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행사 홍보 목적의 현수막, 포스터, 현수기 등에 대해서는 게첩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시길 바랍.

[제안 : 해나루&수놓음공연예술단 대표 김영울]

- ⇒ 각 시·군 문화예술 관련 부서에 지역주민 문예회관 우선 대관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문화예술 관련 홍보목적의 현수기 등의 게첩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권영택 과장]

- 충청남도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여 예술인들이 창의적, 열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

[제안 : 양대 산맥그룹 한창대 대표]

- ⇒ 현재 도에서는 인구·경제 등의 제반 요인이 활발히 형성되고 있는 천안·아산 일대에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도민들께서는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시길 바랍.

[답변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권영택 과장]

- 정책과 예술의 고리가 있어야 하고, 문화예술창작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청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질의 : 청년예술인 단체 당근주스 대표 장현재]

- ⇒ 청년 예술인 단체 시장 형성이 현재 충남도는 전반적으로 약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 중심 청년예술인 단체의 예술활동을 종합·집약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답변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권영택 과장]

-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추후 보다 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금일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의정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함.

[정리발언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 의원]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예술인활동지원 운영체계 마련
 2.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창작환경조성을 위한 예술인 마을 조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현할 로드맵 수립
- ⇒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지원, 폭 넓은 공연장 활용 기회 부여 등 충남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필요

<결 과>

- 지역문화예술진흥법,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방안
 - 예술인 마을공동체 조성
 - 전문예술인 양성교육 활성화, 청년예술인단체 심사기준의 타당성 확보
 - 공연장 활용기회 확대지원, 전문예술가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방안 수립
 - 충남문화정책의 고유성과 정책성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 생성
 - 공공성의 영역차원에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수립
- 충청남도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 전문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공간 지원, 예술 장르별 특화된 공연 공간 확보
 - 예술인들에 대한 실제적인 복지정책 수립, 도시재생사업에 예술성 가미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 등 대책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11. 4.(월), 14:00~16:00 / 서천군 서면 서부수협〉



I 총 평

(양금봉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준비된 의정토론회로
 - 도민과 도의회가 살펴보아야 할 정책과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 피해 대책방안 모색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논의하였으며,
 -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 토론회의 주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2인)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송전선로란 -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 변전소와 발전소 상호간에 전력을 전송하는 선로
 - 가공송전선로는 철탑이나 철근 콘크리트주 등의 지지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전선을 시설하는 것이다. 지지물, 전선, 애자, 가공지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가공송전선로를 이용하여 송전하고 있음
 - 지중송전선로는 전력케이블을 이용하여 지중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이다. 이 방식은 가공송전선로에 비하여 안전하고 도시미관이 좋으며, 통신선에 영향을 적게 주는 특징이 있음
-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피해
 - 산림훼손을 비롯한 생태계 파괴
 - 송전선로 위치와 보상에 따른 지역주민 간, 지역공동체 간 갈등조성
 - 자연환경 피해-산사태, 소음, 진동, 교통사고, 진입로 훼손 등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지역주민의 인위적인 생존권 침해
- 송전선로 운영과정의 피해
 - 암 등의 원인 물질로 보고된 전자파 피해
 - 송전탑 주변마을의 집중적인 벼락, 낙뢰 피해
 - 경관 훼손 및 소음공해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근지역 발전저해
 - 토지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 건강에 대한 심리적인 장애
 - 영농단지의 대규모 과학영농(항공방제 불가) 피해
 - 주거생활 부적격 이미지로 지속가능 발전지역 대상 제외



○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피해

- 한국토지공법학회는 180여개 지역을 표본으로 선하지를 중심으로 잔여지까지의 지가하락을 조사
- 토지공법학회의 표본조사 결과를 준용하여 충남의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지가하락으로 최소 39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보는 것으로 추정

○ 향후 정책적 과제

- 기존선로에 대한 피해조사와 저감 대책 수립
- 송전선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신규선로에 대한 전면 재검토
-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 혹은 전면개정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원전 및 석탄화력 중심에서 전력수요 관리와 지역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 시스템 전환
- 지역의 에너지 자치권 보장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화력발전과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인식

⇒ 석탄화력발전과 송전선로

- 충남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대부분 타 지역으로 공급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우리지역에 경제적 손실(지가하락, 농작물피해 등)과 환경·건강피해를 주었음

※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흉물, 스트레스, 불안감, 울분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

○ 송전선로의 이해

⇒ 전자파와 전자계

- 전자파 : 전기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파동(주파수 범위 : 3kHz~300GHz)
- 전자계 : 주파수 범위 60Hz 이하의 전자파를 극 저주파 전자계로 구분 (송전선로, 가전제품)

○ 송전선로 인체영향 연구사례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2002

- 소아백혈병 관련 극 저주파 자계의 인체에 대한 발암성은 제한된 증거를 가지고 있음.
- 모든 암에 대한 극 저주파 자계의 인체 발암성 증거는 부적절함
- 동물실험에서 극 저주파 자계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부적절하고 전계의 발암성 관련 이용 가능한 결과가 현재는 없음
- 극저주파 전계는 인체에 발암가능성(possible human carcinogen)인 2B군으로 분류

※ 위해성 증명할 과학적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건강 악영향을 부정할 근거 역시 없는 상황

※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기를 권고함

2 지정토론(4인)

① 황성렬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지역주민들 피해, 다 같이 모여 해결하려 환경단체, 시민단체, 개발위원회 등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힘을 모아 협상 하고 있음
- 송전선로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당진시는 6~7년 동안 한전과 끝없는 협상으로 인해 전국 최초로 노선을 직선으로 변경하였음
- 1차 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과 협상, 2차 당진 시민과 함께 지중화 되도록 협상

② 채종국 (미세먼지 고압선 철탑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석탄화력발전소 충남에 30기로 전국 60기의 절반이 50%가 우리도에 밀집되어 있고, 충남지역에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은서울과 경기도의 배출량을 합친 양보다 4배가 많음



- 화력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며 보내는 송전탑이 우리 충청도내 4,000기 정도가 있고, 지중화율은 1.4%에 그치고 있음
- 홍원마을은 발전소가 가동된지 수년이 흐른 뒤에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으로 주민들이 사망하였고 현재 관련 질병으로 인한 힘든 투병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약 50~60명에 이르고 있음
- 전자파의 원인이 되는 송전선로는 인체에 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고, 고압송전선로는 경관문제, 전자파공해 등의 이유로 지상에 설치되던 것이 점차 땅속으로 배설되어 지중화 되는 추세임
- 전자파의 원인이 되는 송전선로 관리주체는 전력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송전선로 주변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음

③ 공상현 (충청남도 에너지과 에너지전환팀장)

- 송전선로, 발전소 많이 위치하고 있음. 전국에 42,430개, 충남은 4,100개, 송전선로 1,350km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8~9%, 지중화율은 1.4%, 충청남도는 농촌지역이 많아 지중화율이 낮음
- 서천군 서면 지역 방문하여 보니 발전소 주변 마을에 송전탑이 중간에 위치하고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 바로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됨
-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민이 소외되었다 하더라도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함
- 관계법률 국회에 9건, 내년도 계획세우고 있으며, 국회토론회도 생각을 하고 있음.

④ 도중원(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립팀장)

- 정책수립 및 제도 마련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수립('18. 12)

- (목표) ‘22년 대기질 PM-10 $30\mu\text{g}/\text{m}^3$, PN-2.5 $15\mu\text{g}/\text{m}^3$ 달성(2,165억원 투입)
- 8대 전략 43개 과제 추진, ‘15년 대배 대기오염물질 35.3% 감축(98,571톤)
- 「충청남도미세먼지대책위원회」 구성·운영(‘19.3.29)
- (구성) 5개 분과(정책기획, 연구사업, 거버넌스, 생활환경, 홍보)131명
- ※ 위원회 주관, 충청남도 미세먼지 정책방향 포럼 개최(2019.10.21.)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19.5.30)
- 발전·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개정(‘19. 5월)
 - 고압육상전력공급장치(AMP) 설비 도입(부두 9개소, 선박 11대)
 -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16개사, ‘22년까지 14,464톤 감축)
 - 소규모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155개소, 120억원)
 - 전국 최초 연료전환(병커C유-LNG/LPG) 협약 체결(‘19.8. 도-중부발전-30개사)
-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 대기오염측정소(32개) 설치, 민간 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41개)
 - 충남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구축(‘18.12월, 보건환경연구원)
-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 전기차, 수소차, 천연가스자동차 등 친환경차 3,130대 보급
 - ※ 전기차 2,577대, 수소전기차 418대, 천연가스자동차 135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7,748대 추진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카메라 40대, ‘19.12월말)
- 대내외 협력체계 강화
 -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 협의기구 구성(충남, 충북, 대전, 세종, 금강청)
 - 동아시아 지방정부와 환경행정교류 추진(강소성, 산동성, 섬서성)
- 미세먼지 정보 및 대응방안 도민 홍보
 -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50개), 미세먼지 대응 홍보영상 방영
(대전MBC, ‘19.10~)



3 종합토론

- 서천군 서면 24개 마을 중 4개 마을이 피해지역임. '83년 신서천발전소가 건립되었고 30여년 살면서 피해를 느끼면서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음. 현재 83%의 주민들 동의하에 산자부에 건의하였음.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전자파 및 미세먼지 등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잘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함.

[조덕환(미세먼지고압선철거 대책위원회 위원장)]

- 서천군 서면지역 주민들 송전탑 볼 때마다 울화가 치밀고 안타까움. 대항으로 지중화 요구, 지중화가 되면 경관적으로 안 보이고, 전자파 위험에서 노출이 안 되어 안심하고 있는데 30쪽 책자를 보면 지중화해도 위험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안심할 수 있는지? 다른 대책이 있는지? 지중화 하는 것이 맞는지? 당진에서 지중화를 했었는데 결과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김하진(서천군의회 의원)]

- 당진은 현재 지중화된 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은 있음. 수도권의 지중화율은 높은 반면 농촌지역의 지중화율은 저조한 실정임.

[답변 : 황성렬(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일상생활에서 전자계 수치는 0~4이며 국가마다 기준설정이 조금 다름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 수치가 많이 높은 편이며, 사전에 예방 가능하며 걱정 안해도 됨.

[답변 : 명현남(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 서천화력발전소가 현재 건립되고 있음. 저는 35년을 이곳에서 살면서 미세먼지, 스트레스, 소음피해 너무 힘이 듭.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잎사귀 채소는 먹지 못하고 뿌리채소만 먹을 수 있음. 충남도에서 나오신 미세먼지관리팀장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함.

[질의 : 이상준(서천군 서면 주민)]

- 발전소 주변 피해 많음. 현장에 먼지들 많이 날리고 석탄운반, 태우는 과정 등 법적체계 강화 필요, 정신적·건강상 피해 우려 됨. 주민건강

영향조사 환경보건팀에서 계획하고 있고 후속 대책 따로 준비 하고 있음.

[답변 : 도중원(충남도청 미세먼지관리팀장)]

- 빨래를 낀다든가 생선을 건조 시키는 것은 할 수가 없음. 바람이 불면 눈이 아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함. 도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질의 : 서천군 서면 마을주민]

- 지금 현재 연구용역 조사하고 있음. 내년 예산편성에 마을을 여러개 지정하여 안심시범 마을 운영, 미세먼지 창틀, 정화식물, 공기정화기 등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답변 : 도중원(충남도청 미세먼지관리팀장)]

- 오늘 의정토론회를 해주셔서 감사함.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최고의 피해자는 노인분과 아이들임. 서면에 두 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곳은 입학생이 한명도 없고, 한곳은 일곱명이 입학할 하였음.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피해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해 전주, 익산, 군산, 서천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임.

[조갑성(청년회장)]

- 서천군 서면 주민 모두 피해를 주고 있음. 발전소 건설해서 어촌계 피해가 상당히 많음. 홍원 마량 어촌계에선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어촌계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 : 홍 원(어촌어장)]

- 서천현황 문제 흘러버리지 않고 오늘 도출된 문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음. 꾸준히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목소리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각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음.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에서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토론 및 대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이번 의정토론회에 참석한 도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 발언 : 양금봉(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신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송전선로의 지중화 최소한 전국 평균 12.3% 될 수 있도록 특단에 대책 마련
2. 송전선로 직하지역 주민 건강 피해조사 철저와 송전선로 관리 효율화
3.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를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 과>

- 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방지 등 대책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주민피해 현황과 실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마련
- 주민건강영향 조사 및 대책방안 모색하여 개선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에너지과, 기후환경정책과)
 -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스마트 혁명에 대한 충청남도의 현재와 미래상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11. 4.(월), 14:00~17:00 /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이벤트홀〉



I 총 평

(이공휘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과 스마트 혁명 시대에 걸 맞는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도민과 도의회가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 및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충청남도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 거버넌스 및 충남형 디지털 트윈 구축, 공공데이터의 개방 등을 제안함.
 -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 충남형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전문가 영입 등 충청남도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이 필요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최돈정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책임연구원>

- 온·오프라인 상 거버넌스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등을 가치 있는 정보로 재생산하기 위하여 데이터화(디지털 트윈화)가 필요함.
- 지역의 중앙에 대한 수직적 예측력을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공간데이터를 발굴하여 지역 내 통합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과 중앙 간의 협력적 교류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충남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데이터 전문가를 영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연구원, 경기 콘텐츠 진흥원 등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획-데이터 수집-분석-정책화가 이뤄져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공무원들이 하가에 먼 길인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규제완화 등 법제환경 구축, 도민과의 중간 역할로서의 중개자 역할 수행 등

2 지정토론(5인)

①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충남형 빅데이터 정보화 전략 계획 및 플랫폼 구축사업은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사결정 사안들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인프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정보 인프라를 토대로 다양한 개별적 사례 발굴을 통해 도정의 발전과 실생활에 있어서 편의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것임.
- 이와 함께 충남형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개별적인 사례들을 꺾어서 개별 사례만으로는 창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편익을 만들어내고 한정된 자원이라는 한계 속에서 정책적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함.

- 이와 관련해 향후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및 예산 확대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급속한 확대와 정교한 IT 분석도구들이 밀물같이 쏟아져 나오는 현 시점에서 이를 충남 도정에 활용하기 위한 큰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정보 인프라 구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빠르게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일 것임.

② 이동욱 (SK텔레콤 지오비전 사업담당부장)

- 플랫폼은 현명한 수집과 저장의 기반이자 결과물로, 플랫폼은 수집, 저장, 분석도구가 아닌 피드백과 이에 따른 다른 고도화까지 모두 저장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도구가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충남형 플랫폼이며, 특히 충남형 디지털 트윈은 도구이자 플랫폼의 구현형태 중 하나로 이 속에는 충남도민의 충남에 대한 미래상이 들어있어야 함.
- 특히 SKT의 경우 5년 전부터 Big Data TF를 구성하여, 사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의 수요를 정리하여 필요 데이터를 Data Lake를 만들어 저장하고 배포하기 시작했음.
 - Data Lake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적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체계가 충남형 플랫폼 구성과 운영의 필수기반이자 원동력이 될 것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과 전문가 집단 구축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③ 오혜정 (충남연구원 기획조정과장)

- 단순한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이 아닌 데이터가 지니고 있는 참 의미와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해석, 활용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계와 융합 전략이 필요함.
- 특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미래에 예측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의 경우 한 분야의 전문가, 행정가, 민간 등이 해결점을 모색하기 어려운 만큼, 각 정책 영역들의 접점이 필요함.



- 이러한 접점을 발굴하여 테스트 연구, 시범사업 발굴 및 제안, 과제 도출 등이 필요하며, 특히 연구영역 간 융·복합이 필요한 상황임.
- 궁극적으로 이를 위해선 전문가 집단 구성과 데이터분석 플랫폼,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상황임.

④ 김영명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지역 빅데이터 허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의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부터 추진될 예정임(사업비 10억원)
- 또한 민간 활용 가치데이터 발굴을 위한 공공데이터 서포터즈를 공모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창업 붐을 조성한 바 있음
- 이러한 데이터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나아가 도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⑤ 고재성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장)

- 현재 충남도의 공간정보시스템 가운데 공무원이 활용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월 평균 10,000여명이 활용하고 있고, 도민이 활용하는 공간정보 포털의 경우 월 평균 60,000여명이 활용 중에 있음.
- 토지관리과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신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랜드로 앱’을 제공 중에 있음. 이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기반으로 증강현실과 토지공간정보를 융합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충청남도 공간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팀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③ 종합토론

- 토론의 주요 내용은 인적구성, 네트워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인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토론회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제안 : 넥스엔정보기술 이사 최진영]

⇒ 정보화담당관실 내 빅데이터통계팀이 새로 조직됐지만, 아직은 활성화 전 단계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음. 특히, 인적구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논의 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김영명]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2.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필요
3. 규제를 완화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 환경 현실화 필요
 - 데이터기반 행정을 탈정당, 범상임위 측면에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결 과>

- ‘스마트 정책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제안
 - 서울연구원, 경기 콘텐츠 진흥원 등의 사례와 같이 충청남도에 적합한 별도 설계 필요
 - 데이터 플랫폼이 나아가 충남형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충남도민의 충남에 대한 미래상이 들어있어야 함.
- 충남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데이터 전문가 영입 제안
 -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활용, 정책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
- 데이터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발족 제안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공공부문 노동자 안녕하십니까? 의정토론회

〈19. 11. 21.(목), 14:00~16:00 / 충남도서관 다목적홀〉



I 총 평

(이선영 의원)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노동조합 구성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정을 점검하고 전환 후 노동현실을 청취하는 등 정규직 전환정책의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로
 - 관계공무원과 노동조합 및 도의회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제도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정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환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앞으로, 충청남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배경과 취지에 맞도록 인사 관리에 반영하고,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일체감을 고양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전환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전환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김윤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개요와 그 결과를 설명하고, 그 동안의 비정규직 고용업무 개선 추진현황과 처우개선 현황을 살펴본 후, 앞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 기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전환에 적극 나설 것을 설득할 필요 있음.
-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 볼 필요 있음.
-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정협의회 등에 전환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함.
- 정규직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포용수준은 적절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실질적 고용평등을 의미하는가 등을 살펴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함.

2 지정토론(4인)

① 윤웅열 (충청남도 공공노동조합 조직국장)

- 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도 구성원으로서 자존감 부여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으로 고용안정화 및 사회 양극화 해소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 및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음.
-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총괄·실무책임자의 부재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한 형식적 접근 또는 몰이해 △공공노조와 기업노조의 소통 미흡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경력누락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한다”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추진배경과 취지를 고려하고, “전환과정의 수립에서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한다.”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의 절차적 의의 또한 지켜져야 할 것임.

② 장명순 (충남도청 공무원 지회장)

- 충청남도는 도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순환 전보 원칙과 개인고충 및 희망전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시행하고자 한다는 ‘2019년도 공무원 정기인사 기준’을 발표하였지만 4월, 7월의 인사에서 도가 발표한 인사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함.
- 이러한 인사단행으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임금저하 △교통비 증가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경력·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전보 △근로계약서에 위반하는 보직 변경 △개인의 동의 절차 없는 일방적 인사배치 등 고충의견이 접수되고 있음.
- 인사단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단체협약 위반 여부 △단체협약 위반 여부 △2년 이상 상시 계속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는 답변해주시 바람.
- 공무원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충청남도청의 직원으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 있음.

③ 김대현(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왜 생겨났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과 주권자인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 있음.
-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함.

④ 김기호(충청남도 인사과 단체지원팀)

-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유사업무에 종사함에도 임금 등 근무조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에 의한 인력사용 증가추세,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시 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하지만 해당사업의 폐지 또는 축소 시 인력조정이 불가하다는 조직 안정성의 문제 △동일자격 유사업무에도 지침 등에 따른 임금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예산상의 문제 △종합적 대책보다는 가시적 성과의주의 정책이라는 정책실효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공무원 위주의 업무분장에서 벗어나 공무직 등에도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인원, 담당업무, 계약기간 등 현황과약을 위한 공무직 등에 적합한 인사관리 및 급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③ 종합토론

- 공공연하게 “공무직 하나 줄이면 기간제 2명 채용하겠다” 라는 말이 들리는데 기간제를 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무평가를 무기로 갑질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본 바 있는가?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공무직 사무실 집기 등의 마련 계획은?

[질문 : 장명순 충청남도 공무직 지회장]

- ⇒ 기간제를 양성할 이유 없고, 근무평가는 공무직 평가 기본방침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일 뿐 갑질은 없으며, 노사협의회는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부분 있어 반성하고 노사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무직 사무실 집기 문제는 사무실 분리에 문제가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기본집기만이라도 들여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 김기호 충청남도 인사과 단체지원팀]



- 전환주체가 충남개발공사에서 충남도청으로 바뀌면서 직원들 사이에 전환을 어디로 하고 싶은지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도청으로 오고자 하는 직원이 많았음으로 도청이 주체가 되어 전환심의를 진행하게 됨. 전환 과정에서 도청으로 갈 경우 임금삭감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실제로 근무해보니 임금규정에 의해 호봉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음.

[질문 : 이 호 충남도청 운영지원과 공무원직 청사관리지회]

⇒ 복수노조의 문제를 사용자가 활용한 측면은 있으나, 경력문제는 심의기구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 노동조합의 입장, 기간제 심의를 하면서 사용자가 정보를 취득한 부분이 있어, 전환심의 기구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임금 협약서를 대표노조가 체결한 사항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행한 사항은 아니고, 법상 명백하게 위반한 사항이 있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것임.

[답변 : 윤웅열 충청남도 공공노동조합 조직국장, 장명순 충남도청 공무원지회 지회장, 김기호 충청남도 인사과 단체지원팀]

-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대처하고자 했으나 한계점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정리발언 :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전환과정을 점진하고 전환 당사자들에게 노동현실을 청취하여 정규직 전환정책의 실질적 제도개선책을 발굴해야 함
2.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정협의회 등에 전환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고, 정규직 전환이 실질적 고용평등을 의미하는가 등을 살펴 실질적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함

<결 과>

- 충청남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배경과 취지에 맞도록,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일체감을 고양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전환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화 전환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무원 위주의 업무분장에서 벗어나 공무원 등에도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원, 담당업무, 계약기간 등 현황과약을 위한 공무원 등에 적합한 인사관리 및 급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음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는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 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서울시 의회의 본격적인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크게 4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서울시 예산 총론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행정·복지·경제·문화 분야, 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분야, 서울시교육청 예산 분야 등 3개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총 8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희망의 경제 선순환’ 역대 최대 과감한 확대재정 예산안 39조 5,282억원과 2조 4,948억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내년도 서울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완전 돌봄 체계 실현’, ‘혁신적 청년 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 SOC 확충’ 등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부족한 재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1월 1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9조 9,7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증설 및 돌봄교실 확충, 무상급식·무상교육 확대, 기초학력 보장 등 공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 사업,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위와 같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원규모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서울시 지방채발행계획의 필요성과 적정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법성, 산출내역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예산안에 대하여 2019년 대비 10.6% 늘어난 예산규모의 적정성, 12조 원대를 첫 돌파한 사회복지사업예산의 효과성 및 제도적 미비점, 역대 최대인 일자리 예산이 실질적인 고용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변화의 필요성, 3조원 지방채 발행규모의 적정성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어려운 시기에 편성된 귀중한 예산인 만큼 ‘창을 베고 누운 채로 아침을 맞는다.’는 침과대단(枕戈待旦)의 각오로 예산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는지 엄격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홀로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행사 실시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29일(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소외 계층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고, 이웃사랑에 대한 범도민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홀로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도의원 등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내의, 찜질팩, 장갑 등 다양한 방한용품으로 구성된 보온꾸러미를 제작하였다. 보온꾸러미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어르신 200여 가구에 전달돼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힘이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의회는 2014~15년 군경장병 위문 및 노인요양원 봉사, 2016년 자선바자회, 2017~18년 김장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해왔다.

행사에 참석한 김지수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난방비 등의 문제로 추위에 노출되어 계신 홀로어르신들께 사랑과 온정이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번더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개정 법령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 개정이유

최근 지진 등 각종 재난, 재해 및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시설 중 상당수는 30년 이상 노후되거나 내진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교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나.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둠(제7조).
-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고하도록 함(제8조).
- 라. 감독기관은 장이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마.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 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 사.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하고, 안전점검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아.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과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이용자 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자.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면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함(제18조).
- 차.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자, 학교경계로부터 4미터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등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9조).
- 카.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제23조).
- 타.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30조).
- 파.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도록 함(제35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3.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위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정보·무지점자단말기 등의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2조제5항).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이수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5조).
- 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개선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과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제25조의2 신설).
- 라.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 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59조의14 신설).
- 마.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제72조제3항제2항).
- 바.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제80조의3 신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공영주차장 급지 기준에 따라 공영주차장별로 급지가 정해 지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 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등 관련)

[의견 19-0342, 2019. 10. 30., 광주광역시]

【질의요지】

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공영주차장 급지 기준에 따라 공영주차장별로 급지가 정해 지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 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구청장이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 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할 경우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같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을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주차장법」 제9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이하 “광주광역시북구조례”라 함)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는 급지 별로 시간제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별표 1 비고 제2호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는 지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1급지부터 3급지까지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안」(이하 “광주광역시북구조례안”이라 함) 제4조제4항에서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별 급지는 별표 2(공영주차장 급지 구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광주광역시북구조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공영주차장 급지 기준에 따라 공영주차장별로 급지가 정해지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 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같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279(병합) 결정 등 참조),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서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주차장법령의 위임에 따라 주차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영주차장의 급지 기준을 광주광역시북구조례 별표 1 비고 제2호에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당 조례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주차장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입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자치법규안은 일련의 자치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주민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발간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쪽 참조), 이 사안에 있어 광주광역시북구조례 별표 1 비고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급지 기준과 달리 구청장이 특정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조정한 경우에는 특정 공영주차장의 급지 조정 내용과 그에 따른 주차요금은 해당 조례의 규율 대상인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예컨대, 특정 공영주차장의 조정된 급지 내용을 공보 등에 고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청장이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 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할 경우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같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냐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어느 한쪽의 고유권한을 다른 쪽이 행사하게 하거나 사전적·적극적으로 그 권한에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및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집행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광주광역시북구조례안 제4조제5항의 규정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북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급지 기준에 따라 공영주차장별로 주차요금이 다르게 결정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은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광주광역시북구조례안에 구청장이 특정 공영주차장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급지 기준과 달리 급지를 조정할 경우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해당 조례안에서 구청장에게 필요할 경우 특정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구청장의 일방적인 급지 조정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지방의회가 견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사무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9년 12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